

동안의 학생 수용시설

- 2) 18세 이하인 자들이 거주하는 주택
- 3) 군인 수용시설 또는 외교관용 주택
- 4) 중증 정신질환자가 점유하는 주택.

다만, 소유자 또는 보호자가 납세자인 경우는 제외

- 5) 1구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별도로 구분된 주택으로 소유자의 친족이 거주하는 주택

다음의 주택은 제한된 기간 내에 한하여 비과세이다.

- 1) 빈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은 6월을 한도로 비과세
- 2) 수리를 요하거나 수리중인 주택은 1년을 한도로 비과세
- 3) 사망자의 주택으로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은 6월을 한도로 비과세

다음 주택은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이다.

- 1) 학생인 소유자가 주된 주택으로 사용했던 주택
- 2) 수감자가 수감 이전에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수감이 되어 거주자가 없는 경우
- 3) 거주자가 치료 또는 요양을 받기 위해 떠나 거주자가 없는 주택

- 4) 거주자가 타인을 돌보기(personal care) 위해 떠나 거주자가 없는 주택

- 5) 주된 건물로 분리할 수 없는 종된 건물(annex)

- 6) 파산 신청에 있어 수탁인(trustee)이 납세자인 경우

- 7) 법령에 의하여 거주가 금지된 주택 또는 강제처분이 임박하여 거주자가 없는 주택

- 8) 성직자가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하게 될 주택

- 9) 저당권자에 의해 압류된 주택

## 2. 비과세 주택에 대한 과세 정보 통보

위와 같은 비과세 대상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council tax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. 그러나 council 정부는 주택의 평가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통보한다. council 정부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통보한 주택일지라도 납세자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면 납세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.